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절 회 계  <신설>	제2절 회 계  제12조의2(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) ① 이 법인은 관할청의 요청에 의해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(監理)를 받을 수 있다. ② 이 법인은 관할청의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받을 수 있다.  제12조의3(예산편성의 예외)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.	「사립학교법」 제31조의2 개정에 따른 정관 제·개정 제정. 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제14조(예산편성의 예외)적용
제3절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제13조(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) ①~② <생략>  <신설>	제3절 예산과 결산의 편성 및 보고 공시  제13조(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) ①~② <현행과 같음>  ③ 이 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·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④ 이 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「사립학교법」 제31조 개정에 따른 정관 제·개정 제정.
제17조의1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 정수의 4분의 3과 감사 1인은 한국 성서침례교회 전국친교회의 추천을 받고, 이사 정수의 4분의 1은 대학	제17조의1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 정수의 4분의 3과 감사 1인은 한국 성서침례교회 전국친교회의 추천을 받고, 이사 정수의 4분의 1은 대학	「사립학교법」 제20조 개정에 따른 정관 제·개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고, 감사 1인은 대학평의회에서 단수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</p>	<p>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고, 감사 1인은 대학평의회에서 단수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 <b>이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</b></p>	<p>제정.</p>
<p>제18조(임원선임의 제한)</p> <p>①~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</p> <p><b>&lt;신설&gt;</b></p> <p>④~⑤ &lt;생략&gt;</p> <p>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<b>5년이 경과한 자</b></li> <li>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<b>5년이 경과한 자</b></li> <li>3.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<b>5년이 경과한 자</b></li> </ol>	<p>제18조(임원선임의 제한)</p> <p>①~②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<b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</b>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</li> <li>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</li> <li>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·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</li> <li>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</li> </ol> <p>④~⑤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<b>10년이 지난 사람</b></li> <li>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<b>10년이 지난 사람</b></li> <li>3.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<b>6년이 지난 사람</b></li> </ol>	<p>「사립학교법」 제21조 개정 정관 제·개정 제정.</p>
<p>제25조(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)</p> <p>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</p>	<p>제25조(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)</p> <p>① &lt;삭제&gt;</p>	<p>「사립학교법」 제18조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이사회(議事)의 의사(議事)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② 이사회(議事)의 의사(議事)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이사회(議事)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(音聲)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(遠隔映像會議)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p>	<p>개정에 따른 정관 제·개정 제정.</p>
<p>제27조의1(이사회(議事)의 소집)</p> <p>①~②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7조의1(이사회(議事)의 소집)</p> <p>①~②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(議事)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</p>	<p>「사립학교법」 제18조의2 개정에 따른 정관 제·개정 제정.</p>
<p>제27조의2(이사회(議事) 회의록의 공개)</p> <p>이사회(議事)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이사회(議事)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7조의2(이사회(議事)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</p> <p>① 이사회(議事)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이사회(議事)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(散會) 일시</li> <li>2. 안건</li> <li>3. 의사</li> <li>4.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</li> <li>5. 표결 수</li> <li>6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	<p>고, 그 회의록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(互選)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(間印)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별로 심의·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.</p>	
<p>제77조의3(기금운용심의회 운영)</p> <p>1.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 <b>기금</b>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</p>	<p>제77조의3(기금운용심의회 운영)</p> <p>1.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<b>&lt;삭제&gt;</b>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</p>	<p>사립대학정 책과 -1485 (2022.02.15.) 의거 중복 단어 삭제.</p>
<p><b>제8장 보칙</b></p> <p><b>&lt;신설&gt;</b></p>	<p><b>제8장 보칙</b></p> <p>제82조(사학기관 행동강령)</p> <p>① 이 법인과 설치학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“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.”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<b>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</b></p> <p>가. 학교법인,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</p> <p>나.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정책·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</p> <p>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개입·알선·청탁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3.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.</p>	<p>사립대학정 책과 -3377 (2022.04.11.) 의거 「사립학교법」 개정에 따른 정관 제 개정 제정.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	<p>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4.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</p> <p>5.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설치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</p> <p>2.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 개정은 <b>2022년 1월 20일</b> 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제2조(개정사항)</b> &lt;삭제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 개정은 <b>2022년 4월 20일</b> 부터 시행한다.</p> <p>&lt;삭제&gt; &lt;삭제&gt;</p>	<p>사립대학정책과-1485 (2022.02.15.) 의거 불필요한 조문 삭제.</p>